

☐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

최저임금 미달 지급 확인서(근로자용)			
성 명		생년월일	
사업장명		이직(퇴직)일	
귀하가 제출하시고자 하는 자료(급여명세서 등)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(확인 시 √표시)			
1. 최저임금의 미달 지급에 의한 '정당한 이직사유' 인정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「최저임금법」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로,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 한함.			☐ 확인하였음
2.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「최저임금법」 제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됨			
구 분		산입여부	
매월 고정적 지급	①소정근로 외의 임금	㉠연장·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 (고정연장수당 포함)	미산입
		㉡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	
		㉢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	
		㉣기타 ㉠㉡㉢에 준하는 임금 (예: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)	
	②상여금,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	㉠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(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), 능률수당, 근속수당 등	산입
		㉡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(즉 매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의미)	
③생활보조, 복리후생적 임금	통화로 지급한 것 (예 : 식대)	산입	
	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것 (예 : 기숙사 제공)	미산입	
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		산입	
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		미산입	
			☐ 확인하였음
3. 신청인이 지급 받은 급여가 「최저임금법」을 위반하였는지 여부		☐ 그렇다 ☐ 아니다	
4. 기타 참고사항			

년 월 일
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.

확인자 : (서명 또는 인)